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5월 14일(월) 16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년 5월 14일(월)	담당부서	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4550)	담 당 자	박근형 사무관(044-203-4555)

미국 세탁기·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

□ 정부는 5. 14(월) **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·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, '18.2.7 발효)**가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, **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**했다.

○ 정부는 **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**을 거쳐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

○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**양자협의 요청서**를 **미국에 전달**하고 5. 14.(월) 오전 9시(제네바 시간)에 세계무역기구(WTO) **사무국에 통보했다.**

<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요 내용 >

◈ **세탁기 :**

구분	완제품(TRQ)			부품(TRQ)		
	쿼터	쿼터내관세	쿼터외관세	쿼터	쿼터내관세	쿼터외관세
1년	120만대	20%	50%	5만개	0%	50%
2년	120만대	18%	45%	7만개	0%	45%
3년	120만대	16%	40%	9만개	0%	40%

◈ **태양광 :**

구분	셀(TRQ)			모듈(관세)
	쿼터	쿼터內관세	쿼터外관세	
1년	2.5GW	0%	30%	30%
2년	2.5GW	0%	25%	25%
3년	2.5GW	0%	20%	20%
4년	2.5GW	0%	15%	15%

□ 정부는 **한미 양자협의(2. 1.)** 등을 통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**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*을 요청**했으나,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.

*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.1조에 근거

○ 이에 따라, 지난 4. 6.(금)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**4.8억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* 추진 계획**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,

*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.2조에 근거

○ 이번 분쟁에서 **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**, 상기 통보에 근거한 **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**하다.

*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(제8.3조)에 근거,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 경과 시점('21.2.7)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

□ 정부는 세계무역기구(WTO) "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"(이하 분쟁해결양해)상 **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'양자협의'***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할 수 있도록 **미국과 협의**할 예정이다.

* 분쟁해결양해는 "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"고 규정(제4.2조)

○ 또한,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**패널설치를 요청**할 계획이다.

*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(미국)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(제4.3조),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제소국(우리나라)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(제4.7조)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**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**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참고 : WTO 분쟁해결절차도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상법무기획과 박근형 사무관(044-203-4555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| **WTO 분쟁해결절차도**

